

한국 의료관광 총람

신성장 동력산업
의료관광의 태동과 미래

2013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_ 입문편

I 의료관광 정의 및 유형

04 의료관광의 정의

06 의료관광의 유형

의료관광객의 행위에 따른 분류
의료관광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

10 의료관광 흐름도

CONTENTS



II 의료관광객 유치

18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등록 요건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주요 업무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령

21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전문 인력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활동 매뉴얼

30 의료관광비자

의료관광비자 발급현황
의료관광비자 발급절차

III 한국 의료관광 전문 인력 육성

36 의료관광 전문자격증 및 교육과정

38 의료관광 자문기관 및 참고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관광 사단법인
지역별 의료관광 관련기관
의료관광 실무 참고자료

IV 참고서식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발급승인요청서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



의료관광 정의 및 유형

의료관광의 정의

의료관광의 유형

의료관광객의 행위에 따른 분류

의료관광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

의료관광 흐름도



01

의료관광의 정의

‘의료관광’은 단순히 ‘의료’와 ‘관광’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집을 떠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료’와 ‘관광’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의료관광의 범위는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 있다. 우선 의료의 범위를 환자를 치료하는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며 미용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비치료적 서비스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파나 휴양같은 웰니스도 고려해봐야 한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피로를 풀거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온천지역을 찾았던 것을 의료관광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 세종의 풍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양에 온양행궁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으니 ‘집을 떠나’, ‘심신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온천여행도 엄연히 의료관광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건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하니 반드시 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다⁰¹⁾.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푼다는 넓은 의미로는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활동의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Laws, 1996)으로 보거나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집을 떠나 행하는 모든 레저형태(Eric, 1996)가 의료관광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는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광활동과 함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Goodrich & Goodrich, 1987)하거나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며 여행

하는 것으로 의료와 관광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임범중 외, 2009)하기도 한다. 의료관광을 의료서비스와 휴양, 문화 활동, 레저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인간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을 이탈해서 다시 복귀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광의 일종(주경근, 2010)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듯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의료관광의 개념은 ‘외국인 환자의 의료활동’ 혹은 ‘관광객의 관광 중 의료활동’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관광객을 의료여행자(medical traveler)와 의료관광객(medical tourist)로 다시 구분하기도 하는데 medical traveler는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보다 저렴한 의료비를 찾아 외국을 여행하는 경제적 동기의 의료관광객을 일컫는 반면, medical tourist는 간단한 수술 등의 의료목적과 함께 상당기간 휴양관광을 겸하는 의료관광객을 의미한다⁰²⁾.

의료관광을 생태관광, 도시관광 등 관광 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완전히 분리해서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른 관광 상품들은 모두 관광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데, 관광 그 자체가 방문객의 제반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코든 적든 간에 의료관광과 서로 연관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관광 상품이든 음식은 개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인데 해당 목적지에서 그곳의 전통음식을 탐색하고 섭취하는 관광을 음식관광이라 할 경우, 의료관광 역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음식을 섭취하는 활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관광과 의료관광을 완전히 분리해 낼 수 는 없는 것이다.

01 의료관광 통계 산출,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02 의료관광특구 도입에 관한 연구, 유지운,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UNWTO는 관광통계에 대한 국제권고안 2008(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이하 IRT2008)에서 관광의 주요 목적을 ‘만약 그 관광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목적(3.10항)’이라고 정의하면서 관광의 목적이 ‘그 여행이 관광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여행객이 관광객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3.11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관광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목적)을 근거로 의료관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RT2008에서는 개인의 관광목적 중 건강 및 치료 목적의 관광에 병원, 클리닉, 회복환자 요양소 등의 방문을 비롯, 보건 및 사회시설 등에서 서비스 받는 것, 해수치료 및 스파, 의학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한 성형수술, 의학적 권고에 기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도 포함하고 있다. 1년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장기 치료는 관광여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는 단기적인 치료만 포함한다(1.4항)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관광’을 ‘본인 혹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거하여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거주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타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모든 활동 또는 이를 돕기 위한 동반자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의료관광객’은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의료관광사업’이란 광의로는 의료관광객의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겠으나 우리는 이 중 ‘외국인환자 유치 및 알선에 대한 등록법’에 의거해 외국국적을 가진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료관광객을 알선하고자 하는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관광객 유치사업’을 중심으로 다룬다.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의료관광객의 모객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편의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의한다.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요건 및 전문인력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IRT2008에서 관광을 주목적지에서 1년이라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방문객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고용이나 일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은 의료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거주지역의 국경 외부에 있는 목적지로 1년 미만의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의미하며 방문한 국가의 거주자에 의한 고용이 여행의 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용 및 보수 지급이 여행에서 아주 우발적인 것이라면 해당 여행객은 방문객으로 인정되며 그의 여행 역시 관광여행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RT2008의 경우 관광통계에서 1년 이상 머무르는 사람은 일상 생활 환경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입원 및 치료를 요하여 1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 관광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⁰³⁾.

이 책에서는 의료관광을 본인 혹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거하여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거주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타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모든 활동 또는 이를 돕기 위한 동반자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03 의료관광 통계 산출,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료관광의 유형

의료관광이란 의료관광객이 자국의 의료기관 대신 해외 의료 서비스 혹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문 대상국가의 의료, 문화, 사회, 관광 상품 등을 체험하는 행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활동을 뜻한다. 이들 의료관광객은 다급하거나 중대한 시술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서비스와 동시에 휴식, 쇼핑, 유명관광지의 방문 등을 기대하며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단순히 구전에 의해 소개된 상품의 매력에 이끌렸을 수도 있고 딱히 처음부터 어떤 의료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의료관광을 나서는 사람들의 니즈는 다양하며, 의료관광의 유형도 다양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의료관광객의 행위와 의료관광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을 구분지어 본다.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유형을 정리하든 간에 의료관광객들이 향하는 곳에는 매력적인 의료관광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진료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의료관광객의 행위에 따른 분류

기존 연구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류법은 의료관광객의 일정 중에서 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우선순위 혹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정진수(2009)의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객 본인의 관광, 비즈니스, 동반자를 위한 관광 등 관광활동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의료서비스가 더해진 ‘관광중심의 의료관광’과 순수한 치료목적으로 입국하였거

나 다른 치료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중심의 의료관광’으로 구분하였다. 유지운(2009)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치료를 위해 타국에서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추구하는 ‘의료지향형’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개선 및 미용, 웰빙 등을 추구하며 현지에서의 관광 및 휴양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관광지향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관광객의 행위에 따라 ‘교육·연구개발형’, ‘중증치료형’, ‘선택치료형’, ‘복합형’의 4가지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서병로 외, 2009)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및 의료시술’, ‘피부 및 성형’,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한방진료’로 구분한 경우(임춘례, 2011)도 있으며, Henderson(2004)의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을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의료관광’, ‘미용성형’, ‘온천 및 대체요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중 의료관광은 암치료, 심장수술, 장기이식, 검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에 속하며, 가슴확대, 주름제거술, 지방흡입술의 경우는 성형수술에 속한다. 또한 피부관리, 운동 및 식이요법, 최면술, 마사지, 온천요법, 요가 등은 온천 및 대안적 치료법에 해당한다.

Henderson의 분류

Health Tourism			
Medical Tourism	Cosmetic Tourism	Spas and Alternative Therapies	
Cancer treatment	Breast augmentation Facelifts Liposuction	Acupuncture	Hypnosis
Health screening		Aromatherapy	Massage
Health surgery		Beauty care	Yoga
Joint replacement		Facials and body scrubs	Meditation
Medical check-ups		Exercise and diet	Mud therapy
Neurosurgery		Flower remedies	Retreats
Transplants		Herbal healing	Stress management
		Homeopathy	Thalasso therapy
		Holistic lifestyle	Thermal springs
		Hydrotherapy	

출처 : Healthcare tourism in Southeast Asia. 2004, Henderson, J., Tourism RevInt

의료관광 유형을 의료관광상품에 따라 ‘치료형’, ‘건강증진형’, ‘미용형’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변정우·김양균, 2010) 치료형은 중증질환 치료 혹은 입원을 의미하며, 건강증진형은 치료형과 연관되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등 진단치료를 말한다. 미용형은 스파, 마사지, 피트니스 등이 속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의료관광은 의료관광객의 행위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순수치료형’, 관광에 목적을 두되 가벼운

의료서비스를 더하는 ‘치료 + 관광형’, 본인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 동반자를 위한 일정이 주를 이루는 ‘간호형’, 의료서비스를 목적하지 않았으나 기회가 닿았거나 긴급사태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잠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방문목적별 의료관광 유형

방문 목적	주요 특징
순수치료형	특정 병원/의사를 찾아 입국
치료 + 관광형	간단한 치료 + 관광
간호형 (동반자)	치료받는 가족 구성원의 Care가 우선 목적이나 현지 관광도 겸함
잠재형	다른 치료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 혹은 출장/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 후 체류국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고 치료를 겸한 후 귀국

1) 순수치료형 |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서 입국하는 경우로 주로 자국에서의 치료가 용이치 않은 난치병환자 혹은 차별화된 프리미엄급의 치료나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치료는 지명도, 의료수준, 서비스의 질이 우선시되며 세계 각국 부유층의 이용도가 높다.

2) 치료 + 관광형 | 관광과 휴양이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Medical Spa등의 간단한 치료와 관광이 결합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위험도는 높지 않으나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외의 휴양이나 관광 등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이나 전통의학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웰니스 상품도 개발되고 있다.

3) 간호형 (동반자) | 이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는 않지만 치료받는 가족/동료의 간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

우로 환자의 간호 및 지원이 주된 목적이지만 현지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4) 잠재형 | 다른 치료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사고나 긴급 상황으로 인하여 목적과는 별개의 응급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출장이나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해당국을 방문하였으나 체류기간 중에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어 치료를 겸한 후 귀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차후 의료관광의 잠재적 수요자가 되며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주변인들에게 해당국의 의료관광 접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료관광객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

1) 인접국가 | 의료관광 목적지와 가까이에 있어 방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동시간이 짧아 가벼운 치료나 쇼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가정했을 때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 국가가 해당된다. 이 경우 목적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 노출 빈도가 높다. 상품도 스파, 휴양 등 관광요소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2) 의료후진국 | 해당 국가의 낙후된 의료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혹은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지 못하여 해외 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가정할 때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등이 대표적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암 등 전문시술을 위해 방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건강검진, 미용·성형을 위해 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 의료선진국 | 의료선진국의 의료관광객은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이유로 서비스 비용이 고가이거나 긴 대기시간 등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해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성장하는 미래형 시장으로 의료비 절감과 관광의 목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비보험 인구가 전체 국민

의 17%인 4천만 명에 이르며 치과부문 비보험 인구는 1억 2천만 명 수준으로 매년 5~70만 명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한국 방문목적은 보통 건강검진, 한방, 양성자치료 등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관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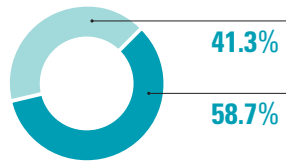
의료관광객의 유형 중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를 함께 고려하는 ‘치료 + 관광형’의 흐름도를 통해 일반적인 의료관광의 단계별 활동 특성을 알아본다.



04 의료관광마케팅조사 보고서, 2008, 한국관광공사
05 2012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2, 한국관광공사

서비스 이용 사전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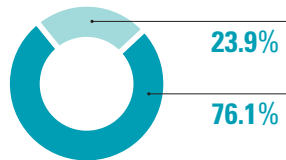
● 여행 전에 계획/이용 ● 여행 중 이용



Bese :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단위 : %

서비스 VS 국가

● 서비스 우선 고려 ● 국가를 우선 고려



Bese :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단위 : %

1) 정보 수집 및 상담

의료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나갈 의향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의료관광객)는 본인이 원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등 의료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하게 된다.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⁴⁾에 따르면 경험자의 58.7%가 여행 전에 미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하며 정보수집 시에 국가보다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한국의료관광을 경험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⁵⁾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주변인의 추천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서비스 민감도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인터넷,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한 정보접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관광객은 이 시기에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나 도시의 위치, 기후, 언어, 환율 등의 정보도 함께 수집하게 된다.

한국 의료관광 정보 수집 경로(중복응답) : 정보 수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단위 : 명, %

사례수 (명)	지인을 통해	인터넷	신문 또는 잡지	여행사 및 유치 업체	TV (Arirang TV, KBS world 등)	한국의료 홍보 리플 릿 및 책자	본국 의료진	SNS	기내지 및 공항 광고	기타	모름/ 무응답
[747]	57.6	49.9	17.8	12.4	11.6	8.8	5.9	4.1	2.4	5.6	1.2

출처 : 2012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2, 한국관광공사

한국을 목적국가로 가정했을 때, 기본정보 수집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전문 의료기관 혹은 전문 에이전시나 여행사를 통한 상담 및 상품예약에 들어간다. 소비자인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1) 해외유치업체와 국 내 유치업체를 통한 의

료기관 선정, 2) 해외유치업체를 통한 의료기관 선정, 3) 국내 유치업체를 통한 의료기관 선정, 4) 직접 의료기관 선정 등의 방법이다. 그 밖에 치료 외 여유시간을 위한 관광 및 휴양 정보나 숙박, 음식 및 쇼핑정보 등을 수집한다.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최근에는 한국의 탄탄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장벽을 뛰어넘는 U-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있어도 편리하게 한국 의료기관과 사전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잘 알려진 화상검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손목시계를 활용한 맥박 및 혈압 측정, 휴대폰을 사용한 스트레스, 혈당 자가 체크 및 데이터 전송 등도 모두 U-헬스케어의 일부분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U-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11개 한국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출국준비 및 출국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지와 체류기간 등이 확정되면 의료관광객은 목적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출국준비를 하게 된다. 여권을 준비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 서류 등을 챙겨야하며 비자협정에 따라 체류기간이나 진료 성향에 따른 의료관광비자(C-3-M 또는 G-1-M)등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단계이다. 이 단계부터는 각국별, 의료기관별로 요구하는 바가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고려한 항공권 및 숙박 예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출국준비에 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자체의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떠난 의료관광객은 입국수

속을 밟고 국내로 들어와 미리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게 된다. 숙소까지의 이동방법은 여행사 및 에이전시와 사전 협의 시 안내인이 마중을 나서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인터내셔널 택시나 공항철도 및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 응급환자의 경우 앰불런스를 이용, 공항내부에서부터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앰불런스 출입 관련 인천국제공항 운영 현황

1 일반(비응급)환자 : 출입국 수속 후 공항외부(랜드사이드) 후송 원칙

2 거동불편 중환자 : 항공사에서 사전출입증 신청 후 공항내부(에어사이드) 출입가능

3 응급환자 : 인천국제공항 표준 운영 절차서에 따라 응급처치 후 공항소방대 앰불런스로 병원 후송

숙소 이동 후에는 짐을 풀고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앞서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나 인천국제공항 내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휴식 및 관광을 즐긴다.

3) 의료서비스

의료관광객은 이제 이번 관광의 주된 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여행사나 에이전시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차량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 앰불런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료관광객의 편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호텔 내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검진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호텔 내 의료기관 입주 현황

지역	호텔명	병·의원명
서울	서울 신라호텔	노화예방클리닉
		프라이빗 웰리스 센터
	서울 롯데월드호텔	석फल트 치과
		김기준 한의원 ‘봄’
		김상태 성형외과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임패리얼 팰리스 피부과
		임패리얼 팰리스 치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터케어 검진센터
		코엑스 예치과
		그랜드미여성의원
부산	롯데시티호텔	서울라헬 여성의원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호텔 입점 아님)	자생한방병원
	서울 리츠칼튼호텔	메이클리닉 (성형외과, 피부과, 모발, 노화방지 등)
	동서울관광호텔	J성형외과
	부산 롯데호텔	한국의학연구소(KIM) 부산 검진센터
		E&E 치과
		브니엘 산부인과
대구	부산 메디컬 리조트	연세메디컬
		스마트병원 (국제진료센터,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시티센터	경북대 모발이식센터. KMI 종합검진센터 및 안과 등
제주	제주메이리조트(메이더호텔)	비포성형외과

본 현황은 2013년 5월 기준임

또한 의료기관의 숙박시설(의료호텔 혹은 메디텔) 운영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⁶⁾ 되면서 의료기관이 인근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메디텔 건립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의료진의 상담 및 의료시술 전 과정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의료관광객의 모든 예약일정 및 병원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전 미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병원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이들이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직접 상담 및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전문통역사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통역을 진행하기도 하며, 필요시 의료관광객 자국의사와의 상담도 진행된다.

4) 요양 및 관광

시술이 끝났거나 다음 시술을 위한 회복 기간 동안 의료관광객은 건강의 호전을 위하여 휴양하면서 몸조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나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 여행사, 에이전시, 숙소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휴양, 체험투어, 시티투어, 엔터테인먼트 관광, 음식여행,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다.

5) 귀국

한국 내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어느 정도 회복기간을 거친 의료관광객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까지는 여행사나 에이전시의 환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환자의 경우 앰불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국은 탑승수속 ▶ 세관신고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탑승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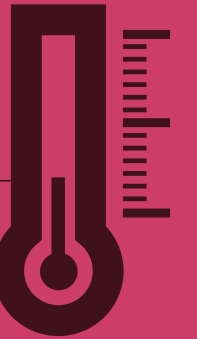
의료관광객이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나 추가진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의 부작용 및 의료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2012년 4월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02-6210-0114)이 설립되어 의료사고 및 불편사항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재원은 외국인 전담 상담기관이 아닌 만큼 코디네이터 등의 도움을 받아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⁰⁶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되어 2013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있다.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등록 요건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주요 업무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령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전문 인력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활동 매뉴얼

의료관광비자

의료관광비자 발급현황

의료관광비자 발급절차



02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등록 요건

본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나 알선 및 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1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법(의료법 제27조의 2항)’을 신설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였다. 이후 의료법은 2010년 1월에, 의료법 시행규칙은 2010년 3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관광객 병상수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에 의료관광객을 유치 혹은 알선하고자 하는 유치업자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국내외 보험회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활동과 고액의 수수료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유치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대상

1. 외국인에 대한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로 제한
 - 의료법 제27조의2
 - 보험사의 유치활동을 허가하는 개정안 입법화 중
2.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 비율 :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
 -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5
 - 상급종합병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서울대병원 등 44개)
 - 유치제한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의료법 제27조의 2 제5항) 그 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1) 의료기관의 조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시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전사문서 포함)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혹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의 사업실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2) 유치업자의 조건

유치업자는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 환자 및 기업들에게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치료를 주선하는 사업자 혹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관광객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험금액은 1억 원,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자본금 규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 이주 알선업, 국외 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유치업자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유치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치업자의 신고사항은 외국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입국일 및 출국일이다.

3) 유치실적 보고 대상 의료관광객의 범위

국내의료관광 정책상 유치활동 등록업체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 환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시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전사문서 포함)
2. 정관 (법인인 경우만)
3. 사업계획서
4.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서류
5.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6.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6

매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고되고 있다. 유치실적 보고 대상에 들어가는 외국인 환자라 함은 해외에서 국내에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입국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제외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그러나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치료나 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의료비자(G-1)자격 체류자는 외국인 환자로 분류되며, 미군 소속의 환자 역시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주요 업무

의료관광 유치업체(에이전시)는 의료관광객을 국내병원으로 알선하고, 관광을 비롯한 국내 체류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의료관광 유치업체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나 의료관광 마케터 등을 고용하고 상품을 개발·판매하며, 고객인 의료관광객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을 추천하고, 의료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업체는 의료관광객과 최초로 대면하여 한국의 의료정보와 진료비 등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료관광 유치업체는 현지에서 의료관광객을 직접 모객하기도 하고 활동범위나 전문성에 따라 해외 현지 유치업체와 국내 유치업체가 협업하여 역할을 구분하기도 한다. 유치업체는 의료관광객의 모객 외에도 통상적으로 공항영접 및 환송, 의료관광 통역과 호텔 등의 알선수배, 관광프로그램 기획,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진료기록의 정리 및 현지 발송 등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체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우수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009.10.7. 개정)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전문 인력

의료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을 가진 의료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언어, 문화적 이질성을 갖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고객감동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 지식과 함께 의사소통은 물론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객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범위와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 전문 의사

국제 전문 의사는 국제인증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사로서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학위 또는 수련과정을 마치거나 의료 활동을 펼친 의사가 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는 등 의료관광객과 의료진 사이의 언어,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2) 국제 임상간호사

국제 임상간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전문적인 임상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상황의 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간에 효과적이고 원활할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 중재 및 관리하는 간호사로서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세계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산업에서 언어능력은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으로 고객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과 통번역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유치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공항영접 및 환송, 원무, 진료, 요양, 관광레저문화, 보험 등 의료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의료진과 의료관광객과의 중개자이자 의사소통창구로 활동한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포함해 각 분야별 의료기관 혹은 의료관광 유치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이 외에도 의료컨설팅 업체, 실버타운, 병원서비스 강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언어적 능력 외에도 문화적 공감대 형성 능력과 고도의 전문적 의료관광 통번역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4) 의료관광 마케터

의료관광 마케터는 국내외 의료관광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상호 연결하고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여 상품개발 및 홍보 등 의료관광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의료관광 마케터는 여행사, 의료컨설팅 업체에서부터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5)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는 종교 및 지역별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의료관광객에게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 등 의료관광 발전에 다방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의료관광객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6) 의료관광 국제간병사(Caregiver)

국제간병사는 의료관광객의 입원 기간 내내 환자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는 물론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간병지식과 질병별 간병법은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 몽골어와 아랍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과 해외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요구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간병사 교육과정이 시행한 바 있다.

7) 의료관광 테라피스트

의료관광 테라피스트는 스파, 허브, 에스테틱을 비롯하여 손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생체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테라피스트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활동 매뉴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 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관광 전문가이다. 앞서 살펴본 ‘치료 + 관광형’의 의료관광 흐름도에 맞추어 고려할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주요 활동



1) 문의 및 상담

의료관광객과의 상담이 시작되면 우선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관광객의 정보(개인정보,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물과 진단서 등)이다. 의료관광객이 관심을 보이는 진료 상품과 관광상품도 꼼꼼히 체크하여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의료관광 의뢰 및 체류계획 설정

의료관광객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료과목을 결정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진료계획 및 진료비 산정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의료관광객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것이 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된다. 의료관광객이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진료계획은 되도록 상세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계획안에는 치료 일정에 따른 입원일수 및 외래 진료횟수, 치료 전 검사, 예상 진료, 부가서비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관광객 상담시 주의점

- 호텔 및 숙박시설/ 휴대폰 대여/ 공항 영접/ 관광, 쇼핑 등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무료와 유료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여 상담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활용토록 한다.
- 의료관광객에게 받은 문의 내용은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의료관광객은 적어도 3~4개 이상 예상 상세견적을 받아 들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내용과 차별화된 서비스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한다.

산출된 진료비는 의료관광객이 입국을 결정하게 하는 예민한 요소로, 입국 후에 진료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사전에 진료비 변동사항에 대해 충분히게 숙지가 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각 서비스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체크리스트와 진료비예상 상세견적을 만들어 보내주는 것이 좋다.

3) 의료기관 예약 및 비자업무

의료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입국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합법적인 장기체류를 위하여 2009년 5월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용치료 등 90일 이하의 간단한 진료에는 90일 이하 단기비자인 C-3-M, 90일 이상의 장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엔 1년짜리 장기비자인 G-1-M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의료관광비자 발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의료관광비자비자(C-3-M, G-1-M)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신분증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4) 숙박시설 예약 및 공항영접

의료관광객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기관 측과 병실예약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입국 당일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의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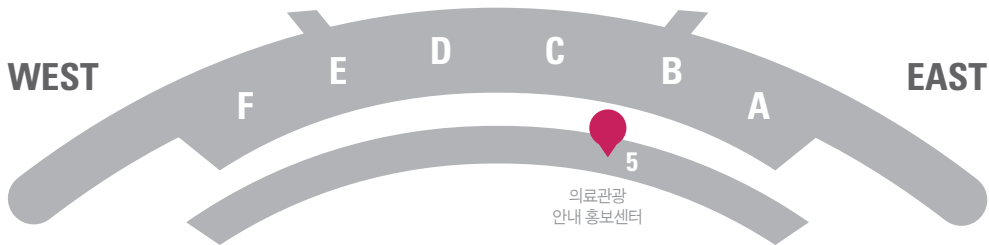
광객이 선택한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공항 영접시 미팅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5번 출구 앞)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032-743-2172)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천공항 영접 흐름도



출처: Facilitating service 운영 매뉴얼, 2011, 현대 메디스

인천국제공항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 위치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환자 공항 내 이송방법

구분	이송 기준	이송 수단	이송 방법
거동불편 비응급환자	랜드 사이드 ⁷⁾	휠체어, 전동차 장애 고객용 특장차	항공사에 사전예약 필요 항공사 직원이 탑승구에서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입국심사 - 일반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라인을 통해 출입
거동불편 중증환자	에어 사이드 ⁸⁾	구급차	사전예약 없는 응급환자 공항소방대 구급차가 (인근)종합병원으로 후송 의료기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기 원할 경우 공항 외부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이송 가능
			사전예약한 의료관광객 항공사에 사전출입증 신청 후 탑승동에서 의료기관 구급차로 후송 가능 출입국 심사는 항공사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속 대행 가능
거동가능 중증환자	일반 승객과 동일	도보, 휠체어 등	인공심박동기, 인슐린펌프, 척추자극기 등의 의료장비를 치료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환자 의 경우, 공항에서 보안검색 통과를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대한항공특수예약과 : 02-2669-7521,7630,7631 아시아나항공예약센터 : 1588-8000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 : 032-743-5207		

출처 : 미래성장동력 의료관광, 2012, 보건복지부

5) 의료기관 방문, 검사 및 치료

의료관광객이 입국하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의료기관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환자와 함께 외래 접수부터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든 개인이든 사전에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보내 사전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정보수집 단계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

기관에 공개한다는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두도록 한다. 의료관광객이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생길 수 있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여주도록 노력한다. 모든 과정에서 의료관광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⁰⁷ 랜드사이드(land side) : 여객 및 화물처리 시설, 기타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구역
⁰⁸ 에어사이드(air side) :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주차장 등을 포함한 구역

의료기관 방문, 검사 및 치료시 유의점

1.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의료관광객의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 보험 가입여부와 가입 증명서 확인, 해당 보험사에 지급보증 여부 확인
- 퇴원시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되는 보험청구 서식확인

2. 입원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원기간 중에는 가급적 하루에 한번 이상 의료관광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병원에 전달하도록 한다.
- 휴대폰을 대여해주어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 환자의 진료 진행사항을 의료진에게 확인하여 초기견적 내용상 입원일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준다.

3. 검사 및 수술(시술)할 때 주의사항

- 각종 검사 및 수술은 시행 전에 검사 내용과 방법, 부작용 등을 의료관광객의 자국 언어로 준비된 서면 자료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6) 퇴원

외래 진료가 끝나거나 입원을 했던 환자가 퇴원을 하는 경우 모두 수납을 하게 된다. 수납은 돈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진료비 납입 방법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퇴원시에는 환자의 의무 기록과 복용해야 할 약 설명, 추후 관리 방법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하지 말고 의료관광객이 사용하는 언어로 서면 작성하여 전달한다. 만약 의료관광객이 의료기구나 약을 항공기에 가지고 가야 한다면 항공사나 세관에 제출할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준비해 준다.

퇴원 후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할 경우, 의료관광객이 원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기존 관광프로그램을 통하여 안내한다.

퇴원할 때 유의점

- 환자의 보험 청구 관련 서식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앰불런스나 이동수단 확인예약
- 환자의 의무기록 및 의사진단/소견서

7) 체류기간 연장

의료관광객의 경우 의료관광으로 단기 입국할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기 어렵지만, 상병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보통 90일 기준, 최장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의료관광객 본인 및 대리인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재허가 받아야만 한다. 전국 해당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자민원(<http://www.immigration.go.kr/>)신청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은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기간 만료 3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서, 여권,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이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연장 신청서류

1. 체류기간연장 허가서
2. 여권
3. 체류기간 연장 소명자료

8) 후속관리

의료관광객이 의료서비스 및 관광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입국시 공항영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출국시에도 공항까지 가는 교통편을 준비하고 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관광객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품목(Tax Free)을 구입한 경우 면세구역 안에 있는 세금환급코너(Tax Refund)등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숙지시킨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대부분의 외항사는 탑승구가 제2청사로 지정되므로 이동시간을 염두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관광객이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나 추가진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치료를 받고 7~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치료 효과와 약 복용 후의 반응 등에 대하여 물어봐주고, 문제가 있을 시 주치의에게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mail 이나 전화를 통한 추가 약의 주문 시에는 주치의와의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하며 약 처방 후에는 약값과 배송비용, 그리고 지불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배송은 입금 확인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 전에 변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소를 재확인 하고 배송

후에는 EMS번호를 메일로 알려 고객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의료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서 추가 의료관광객을 보내주거나 주변에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다.

또한 만약의 부작용 및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사, 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사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0 의료관광 실무매뉴얼’에 의료관광객 리스크관리 사례 및 행정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02-6210-0114)이 설립되어 의료사고 및 불편사항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중재원에서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겪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기초상담 및 법률상담과 조정역할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재원은 외국인 전담 상담기관이 아닌 만큼 사전에 사건 배경과 현재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의료분쟁 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

진행일정	위험요인	내용
최초상담	사전정보 오류로 인한 분쟁	- 의료관광객의 국적, 성별, 나이, 병력, 재정상황 등 체크 - 입국비자 필요시 비자유형은 확인하였는가? - 현재 진료현황 자료는 확인 하였는가? : (의료관광객 국적병원의 진단서) 환자 진료 설계 범위는 확정하였는가? (진료 요청 기간, 진료 범위, 질병여부에 따른 추가진료 사항, 진료기간, 재조정 등)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관련서류 확인 하였는가?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확인)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는 확인하였는가? - 입국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예상치 못한 추가병력 발견시 진료기간 연장 및 상호조정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 사고 발생시 상호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료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통역 오류로 인한 분쟁	- 의료관광객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하였는가? -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됨) 의료관광객에게 코디연락처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 상호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하였는가? - 상담 시 안내매뉴얼은 구비되어 있는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최소 3개 언어정비 필요)
상담내용 분석 및 비용산출	상담내용 분석 오류	- 상담내용에 대해 국제진료 담당자와 정확히 논의 후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가? -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과거병력은 상세히 체크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 하였는가?
	비용산출 오류	- 세부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양약/한약), 옵션 사항 등 의료관광객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 하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을 에이전시 및 의료관광객에게 미리 설명 하였는가? (의료관광객 개인부담이 될 경우 준비가 필요)
	체류자격 및 비자기간 체크오류	- 비자가 필요한 국적을 가진 의료관광객의 경우 비자발급 및 기간은 체크하였는가? - 만료 7일전일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 및 체류연장 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체류자격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진행일정	위험요인	내용
예약	진료설계 오류	- 진료 설계(진료 범위, 절차, 기간, 비용산정 포함) 완료 후 예약 확인서를 발급하였는가?
	대사관과의 분쟁	- 입국비자를 위해 대사관에서 요청한 사전 필요서류를 확인하였는가? - 대사관 요청서류를 충족하여 제출하였는가?
입국	진료불가	- 필요서류를 구비하였는가? - 입국비자 종류를 확인하였는가?
교통편의 제공	안전사고	- 의료관광객 입국, 출국 시 교통편의 제공이 옵션사항인가? - 공항픽업은 누가 할 것인가? (업체위탁 여부 결정) - 업체위탁 할 경우 계약체결은 적정한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시 반영하였는가? - 사고보험의 외국인 보장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응조치는 수립되어 있는가?

출처 : 의료관광실무매뉴얼, 2009, 한국관광공사 재구성

의료관광비자

의료관광비자 발급현황

의료관광객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입국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관광객의 합법적인 장기체류를 위하여 '의료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의료관광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러시아, 몽골 등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 물론 비자면제협정 또는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 국가의 의료관광객은 병원의 예약상황과 비행기 일정, 숙박시설예약 등 간소한 절차에 의해 입국이 가능하다.

2012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96개 국가이며 이중 외교나 관용목적이 아닌 일반 목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국가는 65개국이다. 또한 무비자입국 허가대상 국가는 51개이며 이중 관광 및 통과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국가 또는 지역은 49개이다.

2011년 의료비자 국가별 발급 현황

국가	발급건수	국가	발급건수
러시아	3,999	캄보디아	98
중국	1,757	우즈베키스탄	57
몽골	1,653	인도네시아	42
카자흐스탄	349	방글라데시	23
베트남	193	기타	88
합계	8,259		

출처 : 법무부 언론보도 자료, 2012.2.27

비자면제협정국 (2012년 7월 기준)

비자면제기간		해당국가
30일 면제 (1)		튀니지
60일 면제 (2)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면제	아주지역 (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미주지역 (25)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이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28)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기타지역 (5)	이스라엘, 터키, 라이베리아, 모로코,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 (2012년 7월 기준)

허가기간	해당 국가 및 지역	
30일	아시아 (8)	바레인, 부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에이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남미 (6)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유럽 (10)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대양주 (12)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피지
	아프리카 (5)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란드, 이집트
90일 (7)	90일 (7)	레바논, 일본, 타이완, 홍콩,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
6개월 (1)	6개월 (1)	캐나다

의료관광비자 발급절차

법무부는 2009년 5월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단기종합(C3·90일), 일반(G1·1년) 비자에 치료 목적 입국을 의미하는 메디컬 코드 M 표기를 더해 C-3-M, G-1-M 두 종류의 의료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용치료 등 90일 이하의 간단한 진료에는 단기, 90일 이상의 장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엔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의료관광비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장기체류 방편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발급 심사시 병원 예약 확인서, 재정 입증서류, 초청 의료기관의 등록증 사본 등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도 필요하다. 외국인유치 의료기관이

나 유치업체를 통해 입국한 사람 중 3명 이상이 불법체류를 하면 해당업체의 초청 권한이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서류는 일반인인 의료관광객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비자와 관련해서 입국 준비기간만 2~3개월이 걸린다는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활용한 초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위해서 초청인측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휴공관에 준비된 서류를 보내면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공관 개별 심사가 아닌 유치

의료관광비자(C-3-M, G-1-M)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서류		비고
1. 사증발급신청서	필수	사진부착
2. 여권 및 신분증	필수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필수	현지 진료 확인서 및 진단자료 (원본과 번역본) 의사 소견서 (원본과 번역본), 예약확인서 혹은 의료기관 입금 확인서, 입국목적 사실 확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4. 사업자 등록증	필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사업자등록증
5.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번역본, 소득증명서 번역본, 의료보험가입증명서
6. 초청장	선택	초청사유서, 유치기관 초청장, 체류일정표 (혹은 관광일정표)
7. 동반자 서류	선택	환자 본인과외 가족관계증명서류

업체의 신뢰도가 심사되는 비자 절차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의료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사증 발급 시스템인 휴넷코리아(HuNet KOREA)를 이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www.visa.go.kr) 이를 이용하여 의료비자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경우 3일 이내에 발급가능하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만 해당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피초청인인 의료관광객의 신원을 보증하면 재정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가 HuNet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면 사증발급시 필요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2년 2월부터는 의료관광객 알선 우량업체에게는 최장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관광객 혹은 동반자가 개별적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재외공

관에 제출해하 하는데 제출서류를 구비한 경우 통상 러시아 3일, 중국(선양) 5일, 몽골 14일이 소요되고 있다⁹⁾. 중국 의료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12년부터 중국 의료관광객들 중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체가 보증하거나 의료관광비자로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가 발급가능하다. 또한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전자사증발급시스템 휴넷(http://www.vis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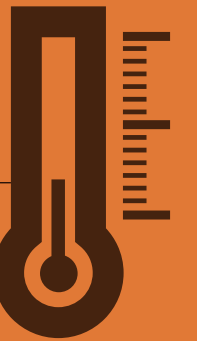


휴넷을 통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절차



99 '의료비자 얻는데 2~3개월' 보도에 대한 법무 자료, 2012. 2. 7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



한국 의료관광 전문 인력 육성

의료관광 전문자격증 및 교육과정

의료관광 자문기관 및 참고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관광 사단법인

지역별 의료관광 관련기관

의료관광 실무 참고자료



03

의료관광 전문자격증 및 교육과정

의료관광객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의료관광객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객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의료관광의 핵심인력이다. 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푸드코디네이터, 국제간병사 등 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학 및 협회,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평균 교육기간은 8주~12주 코스로 모집정원은 30~40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 없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수료자들이 무분별하게 양성되어 수료자들의 질적 논쟁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료관광 교육 수료자들의 체계적 관리와 공인 자격증을 통한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공인 자격증이 신설되어 2013년 첫 시험을 앞두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채 발급되고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련 인증들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보통 의료관광 유치업체 혹은 의료관광 전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의료관광객 활동 전반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시험은 국제진료에 관한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의학기초

등의 지식과 의료관광 상담, 진료서비스 지원관리, 리스크 관리, 관광서비스 지원 관리 등의 업무수행 능력,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어학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험자격을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급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료통역사 자격증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 전문 인력의 고용의무화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아랍어 러시아어 등의 의료통역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병원-대학 간의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대학-의료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간에 MOU를 체결하여 아랍어 학과 내 ‘예비통역 과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¹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관광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의료관광사업 모델의 정립과 이에 따른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형의 인적서비스를 전략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론교육, 실질적인 실무교육 및 사후 교육체계를 갖춘 의료관광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10 보건복지부,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 시험 개요

구 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시험과목	1. 보건의료관광행정(20문항) 2.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20문항) 3. 보건의료관광마케팅(20문항) 4. 관광서비스지원관리(20문항) 5.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20문항)	보건의료관광 실무 - 의료관광마케팅, 관광상담 등 의료관광 기획력 의료관광 기획력 - 진료서비스 관리, 관광관리 등 의료관광 실행 능력 - 고객만족서비스 실시 및 관리능력
시험방법	객관식 4지택일, 100문제	작업형 또는 필답형(주관식)
합격결정 기준	1. 과목당 100점 2.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60점 이상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가.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Level 2)	FLEX	PELT (main)	IELTS
	기준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345점 이상	7.0점 이상

나. 일본어	시험명	JPT	일검 (NIKKEN)	FLEX	JLPT
	기준 점수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20점 이상	2급이상

다. 중국어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 점수	5급 이상과 회화중급이상모두 합격	700점 이상	듣기/읽기유형과말하기/ 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	700점 이상	고급 6급 이상

라. 기타 외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시험명	FLEX	TORFL	FLEX	
	기준 점수	700점 이상	2단계 이상	600점 이상	

※ 비고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필기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료관광 자문기관 및 참고자료

정부 및 공공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 주무부처로서, 국제관광과에서 의료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주무부처로서, 보건산업정책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3)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6년부터 의료관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의료

관광센터가 발족, 2011년 의료관광사업단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의료관광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공사는 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등의 해외홍보마케팅과 의료관광객 국내 수용여건 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운영,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시장조사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31개 해외지사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건·의료산업본부 국제의료사업단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운영, 국내외 의료관광 조사 및 분석, 통계자료발간, 국제의료 컨퍼런스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114	http://www.mcst.go.kr
보건복지부	070-7947-3745	http://www.mw.go.kr
한국관광공사	02-729-9600	http://www.visitkore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000	http://www.khid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43-710-9000	http://www.kohi.or.kr
법무부	02-2650-6399	http://www.immigration.g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	http://www.k-medi.or.kr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의료사고 및 불편사항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중재원에서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겪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기초상담 및 법률상담과 조정역할 등 전체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관광 사단법인

1) KIMA (한국국제의료협회, 구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KIMA는 정부주도로 2007년 3월에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에 법인 등록된 민·관 협의체로 대형 및 전문병원과 정부관련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2) 한국의료관광협회

2008년 9월에 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등록된 협의체로 개별의원 및 유치업체로 구성되어 의료관광업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해외 홍보 활동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진행하고있다.

3) 한방의료관광협회

2009년 6월에 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등록된 민·관 협의체로 한방과 양방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

여대,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충북 제천시, 경희 사이버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

4)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구 코리아의료관광협회)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에 법인 등록된 민·관 협의체로 개별의원 및 병원, 유치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및 회원병원을 연계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

5)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에 법인 등록된 민·관 협의체로 개별의원 및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이사회와 업무구조, 개원의 중심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6) 대한의료관광협의회

2013년 2월 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등록한 협의회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관광 연관 주체(의료기관, 유치업체, 지방 협회, 한방협회, 관광업계 등)가 총망라되어 있는 협의체 형태로 전국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통합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협회 및 단체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이트
KIMA	043-703-8250	http://www.koreahealthtour.co.kr/
한국의료관광협회	02-511-1804	http://www.koreamedicaltour.org/
한방의료관광협회	02-3446-3316	http://www.omto.or.kr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02-3444-4800	http://www.kgha.kr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02-6450-5303	http://www.medicaltour.or.kr
대한의료관광협의회	070-7119-9131	미정

지역별 의료관광 관련기관¹¹⁾

지역별 의료관광 관련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서울시 의료관광팀 서울의료관광지원센터(서울관광마케팅 위탁운영)	02-2133-2794 02-2268-1339	http://kor.seoulmedicaltour.com
	강남구 보건소 의료관광팀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	02-3451-2447	http://medicaltour.gangnam.go.kr
부산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1-555-2491	http://www.bsmeditour.go.kr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051-461-4275	http://www.medinabusan.or.kr
대구	대구시 의료산업팀 대구 의료관광지원센터(엑스코 위탁운영) (사)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053-803-6442 053-601-5097 053-601-5097	http://www.meditour.go.kr
인천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인천관광공사 관광마케팅팀 인천의료관광재단	032-440-2732 032-220-5056 032-260-3103	http://medical.incheon.go.kr

¹¹ 지역별 의료관광 추진 현황은 전략편의 [지자체별 의료관광 추진 현황] 참조

기관명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광주	광주시 건강정책과	062-613-3352	-
	(사)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	061-379-7269	-
대전	대전시 보건정책과 대전마케팅공사 의료관광팀	042-270-4820~3 042-869-5340~2	http://www.djmeditour.go.kr
경기	경기도 보건정책과 경기관광공사 기획마케팅팀 경기국제의료협회	031-8008-4782 031-259-6947 031-8008-4782	http://www.e-gima.com
강원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지식경제부 산하단체) (재)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033-248-5686 033-241-7566	http://gw.leading.or.kr http://www.gwmeditour.or.kr http://www.gwmt.or.kr
제주	제주도 보건위생과 제주관광공사 마케팅팀	064-710-2921 064-740-6044	-

의료관광 실무 참고자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시장조사 자료 및 실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분야에 처음 도전하는 경우이거나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의료관광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 마케팅 조사 (2008)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뿐 아니라,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및

이용의향자,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수요조사 보고서이다. 국가별, 진료과목별 이용시 고려사항 등 의료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력과 불만요인, 활성화 요인을 찾아내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2) 의료관광 경험자 만족도 조사 (2009)

국내 주요 14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한국 의료관광 서비스를 경험한 544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보획득 경로, 동반자 유형, 관광활동유형 등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관광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3) 의료관광 실무매뉴얼 (2010)

제1편. 경쟁국 진료수가 조사

의료관광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 일본의 진료과목별 진료수가와 우리나라의 진료수를 비교함으로써 의료관광 상품 개발 시 참고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비교항목은 건강검진 등 일부 진료과목이며, 추가적으로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일본)의 의료관광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편. 의료관광 필요서식 및 해외 홍보마케팅 채널 조사

의료관광 유치업무에 필요한 필요서식, 즉 입국에서 예약, 입원, 접수, 치료, 퇴원, 출국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류 양식(영어, 일어, 러시아어 번역본)을 담았으며, 타깃국가에서 적용가능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각국의 규제법 소개와 함께 신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4) 극동러시아지역 의료관광 시장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10)

한국 의료관광 핵심 타깃시장인 극동러시아 지역의 동향 및 시장수요, 경험자 만족도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 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보거나, 관심 있는 극동러시아 현지 유치업체, 여행사,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고객불만족 사례를 통한 개선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이끌어내었다.

5) 중국지역 의료관광 시장조사 (2010)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가 중국 현지 리서치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 주요 도시

의 의료관광 시장조사 보고서이다. 여행사와 관광객(소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지역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정리, 제시하고 있다.

6) 한국 의료관광 주요상품 및 상품개발 가이드 (2010)

경쟁국 의료관광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존에 발간한 경쟁국 진료수가, 국가별 시술방법, 병원 및 주요 의료진 경쟁요인, 서비스 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경쟁력있는 진료, 시술을 선정하여 상품 패키지화 사례로 제시하였다. 상품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품화 개발 시 참고할만하다.

7) 의료관광객을 위한 병원문화 및 대표음식 매뉴얼 (2010)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보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동, 러시아, 몽골 및 아세안국가에 대한 식문화 및 주요 환자식 메뉴 개발과 종교에 따른 병원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뉴얼 제작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국가의 주한대사부인이 직접 감수를 보아,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

8) 일본건강보험 해외진료비 지급현황 사례조사 (2011)

싱가포르, 태국에서 일본인 환자들이 자국에 돌아가 해외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일본 환자에게 필요한 최대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본 건강보험(공보험) 환급 상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 의료관광객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에 대하여 환

급여부를 추적하였고, 환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급에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였다.

9) 베트남 의료관광 시장조사 (2011)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개소(2011.3)와 함께 잠재적 의료관광 시장으로 각광받아온 베트남지역의 의료관광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베트남 의료관광 시장동향 및 소비자 수요분석, 업계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해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 한방의료관광 실무매뉴얼 (2011)

양방과 구별되는 한방의료관광 실무에 있어 필요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 서비스 프로세스별 진행 실무, 한방의료서비스 용어, 한방의료관광 타깃국가별 의료시장 특성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11) 한방의료관광 시장조사 (2011)

한방의료관광 경쟁국, 즉 전통의학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의 전통의료관광상품 사례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관광이 벤치마킹해야할 부분을 도출하고, 타깃국가의 전통의료관광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의 기본정보를 제시하고자 기획, 추진되었다.

12) 한국의료관광 총람 (2012)

의료관광산업의 개념과 구조, 해외경쟁국 현황, 한국의료관광 추진 전략과 마케팅 활동 실적 등을 총망라한 국내 최초 의료관광 백서로 다양한 통계와 조사결과, 정책별 지원현황과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담고 있다.

13) 2012 상반기 의료관광 시장동향 (2012)

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수집한 일본, 중국, 미주, 구주 및 아시아 중동지역의 현지 의료관광 동향 및 규제, 타 경쟁국 유치현황을 담은 자료로 지역별 의료관광 동향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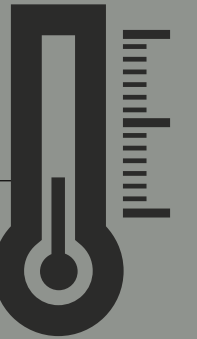
14) 의료관광 우수사례집 (2012)

업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한 의료관광객의 우수사례를 공유, 전파하기 위해 제작한 사례집이다. 주로 러시아, 미주 관광객의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암치료와 신장이식의 사례를 담고 있으며 질병에 관한 정보 및 한국의 경쟁력, 성공사례는 물론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관광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질병에 도움이 되는 추천 관광코스 등이 나와 있다.

15) 한국의료관광상품 8선 (2012)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의료관광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로 상품코스 뿐 아니라 상품을 개발한 에이전시 소개, 관광객의 체험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13 한국의료관광총람



참고서식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발급승인 요청서



04



46

사증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1.16>

(앞 쪽)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 사증발급인정번호(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o :)

사 진 PHOTO 3.5cm×4.5cm	1.성 Surname	3.漢字姓名	4.성별 Gender []M []F
	2.명 Given Names	5.생년월일 Date of Birth	
	6.국적 Nationality	7.출생국가 Country of Birth	
	8.현주소 Home Address		
	9.전화번호 Phone No.	10.휴대전화 Mobile Phone No.	
	11.이메일 E-mail	12.신분증번호 National Identity No.	

여권	13.여권번호 Passport No.	14.여권종류 Classification 外交, 公務, 公務普通, 因私, 其他 DP(外交), OF(官用), OR(一般), OTHERS(其他)
	15.발급지 Place of Issue	16.발급일자 Date of Issue 17.기간만료일 Date Of Expiry

직업	18.직업 Occupation	19.직장전화번호 Business Phone No.
	20.직장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Present Employer	

결혼여부 Marital status	21.[]기혼 married []배우자사망 widowed []미혼 Single []이혼 divorced	
	22.배우자 성명 Spouse's Name	23.배우자 생년월일 Spouse's Date of Birth
	24.배우자 국적 Spouse's Nationality	25.배우자 연락처 Spouse's Phone No.

26.입국 목적 Purpose of Entry	27.체류예정기간 Potential Length of Stay
28.입국예정일 Potential Date of Entry	29.방한사실 Previous Visit (If Any)
30.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31.국내전화번호 Phone No. in Korea
32.국내 체류비용 지불자 Who Will Pay For The Expense For Your Stay?	
33.과거 5년간 여행국가 Countries You Have Travelled During The Past 5 Years	

※ Please note that C-series visa holders are not able to change their residential status after entry into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first clause of article 9 of Immigration Regulation

34.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관계 Relationship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35.국내 보증인 Guarantor or Reference in Korea	관계Relationship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herein. Besides, I am fully aware that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사증종류	단수・복수(2회, 3회 이상)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과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고지사항		
결재	담당자	가 · 부	〈심사의견〉		

수입인지 부착란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47

사증발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7.6.1>

사증발급승인요청서

문서번호			
수 신	장관(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발 신	
참 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외동포영사국장		
제 목	사증발급승인 요청		
	아래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오니 심사결정 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SURNAME) 2. 명(GIVEN NAMES) 3. 생년월일 4. 성 별 5. 국 적 6. 출생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7. 여권의 종류 및 번호 8. 배우자 성명 및 국적 9. 직장 및 직위 10. 입국목적 11. 주소(국가명에서 번지까지) 12. 국내체류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13. 국내연락처(보증인 또는 거래선의 성명·주소·전화번호) 14. 체류예정기간 15. 과거 방한사실 16. 동반가족(여권상 동반자) 17. 국내 체류가족 18. 공관장 의견 19. 기 타		

23236-00711일
210mm×297mm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참고자료

- Henderson, J. (2004) Healthcare tourism in Southeast Asia, Tourism Review International
- 유지운 (2008) 의료관광특구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관광공사(2008) 의료관광마케팅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09) 의료관광실무매뉴얼
- 한국관광공사(2012) 2012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의료관광 통계 산출
- 현대메디스(2011) Facilitating service 운영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법무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medi.or.kr>
- 휴넷코리아 www.visa.go.kr

